

제106회 KISTEP 수요포럼

주 제 : 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담당자 : 조길수 부연구위원(T. 02-589-2177)

포럼 종합 요약

2019. 6. 12

1. 발표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의 발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중심의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하여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신산업을 창출
- 다양한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규제생태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현행 규제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융·복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규제지체 및 규제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규제 방식(명령지시적 규제, 사전적 규제, 포지티브 규제 등)의 비효율성이 증가
 - 규제기관의 정보 접근능력의 한계로 인한 전문지식 부족 및 정보 비대칭성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관리의 협업문화 부재가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킴
 - 지능정보기술과 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참여형 규제환경의 부족과 정보·자원의 상이한 접근능력에 따른 기업 간 격차의 심화는 융·복합 신기술 및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
- 전통적 규제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능정보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산업 발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생태계를 개선할 필요

□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

- 정부는 이미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전적·명령지시적 규제방식에서 사후적·시장유인적 규제수단 도입
 - 일원다용 기술 발전에 대해 다부처에서 규제를 자체 발굴하고 해당부처 소관이 아닌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등 적극 노력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민간 의견 수렴
- 우선 정부는 신제품·신서비스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추진 중
 - 입법방식의 전환(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을 통해 규제의 포괄성과 유연성을 확보
 -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 시범사업, 규제 탄력적용, 사후 규제)의 실시를 통해 신사업 시도 및 추진을 지원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영국보다 범위가 넓고, 2+2로 총 4년 이내에 법령정비 추진 및 정책허가 등의 사업지속성 확보가 가능
- 기존의 과편적인 규제 타당성 입증제도(규제영향분석, 규제일몰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규제개혁신문고)를 보완하기 위해 총체적 규제입증책임 제도를 도입
 -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부처별로 체계적인 입증을 실시하도록 의무 부과
-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한 하향식(Top-down) 규제 이슈 발굴 추진
 - 신기술·신산업의 발전양상을 예측하고, 이에 기반하여 향후 예상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
 - 최근 수행된 자율주행차 및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개선 연구에서는 예상 시나리오(자율주행차) 혹은 사업모델(드론)을 중심으로 기술발달에 따라 단·중·장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규제를 발굴
- 기업·소상공인·국민이 체감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여 상향식(Bottom-up)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 추진
 - 관계부처는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존치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

□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규제생태계 혁신 방안

- 그간 정부의 규제생태계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국민의 규제 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혁신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
-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규제의 수준을 피규제자가 결정하고 제안하는 원칙 중심 규제체계의 도입이 필요
 - 원칙 중심 규제는 피규제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최소한의 일반적인 원칙 수준에서 제안하고, 피규제자는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여 적절한 규제준응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
- 신기술·신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규제의 강도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신기술·신산업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기반으로 규제의 강도를 결정하는 위험기반규제의 도입이 필요
 - 위험기반규제는 신기술·신산업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기존 규제의 강도를 조정하거나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신설하는 체계임
- 규제기관은 전문지식 및 정보 확보를 위해 기업과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규제기관의 협업체계 마련을 통해 규제 합리화 추진 필요
 - 규제기관은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최신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확보하고 규제기관이 규제 포획 및 기득권 보호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 규제기관은 산업 간 규제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규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혹은 규제쟁점 관리기구를 설치할 필요
- 또한,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규제기관은 이들의 참여에 기반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기업 간 불공정 경쟁 해소와 협력 증진을 위한 규제 형평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결론 : 합리적 규제생태계의 조성

- 기술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제도, 규제기관, 규제환경의 효과적·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합리적 규제생태계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연한 입법방식(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등)을 더욱 발전시키고,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사업에 대해 원칙 중심의 사후적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의 협업문화 조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또한, 공급 측면에서의 개선이 피규제자의 규제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 측면에서 피규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간 불공정 경쟁 해소와 협력 증진을 강화해야 함
 - 사후적 규제에 대한 보완장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 필요한 법적 대안 마련 필요

□ 추가발의

-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규제 전문가 확보가 시급
 - 신사업에 적용 가능한 규제현황을 담당 공무원이 파악하지 못하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 등으로 인해 기업이나 피규제자가 규제 자체를 문제의 대상으로 오인
 - 지속성을 가진 규제전문가, 자문기관 등을 확보하여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규제자와 피규제자 모두 규제적용에 대한 부담 경감을 도모
-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규제문화 개선 시급
 - 규제의 독점적 권력을 부처의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효과 제고

2. 패널토론 주요 내용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조선대학교 교수>

□ 발제자가 제시한 신기술 및 신산업 관련 규제이슈

- (규제제도 관점) 기존 규제로 인하여 진입이 불가하거나, 규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규제지체, 규제의 불확실성 문제)
- (규제기관 관점) 부처별로 단절된 규제관리, 산업 영역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규제기관의 폐쇄적 태도로 인한 어려움(칸막이 규제, 상충하는 규제)
- (규제환경 관점) 기술개발과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한 규제 도입 혹은 폐지 등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어려움(규제기관의 정보의 비대칭성, 규제의 불확실성 문제)

□ 발제자가 제시한 규제이슈에 대한 현 정부의 노력

- (규제제도 관점) 기존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적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도입 추진
- (규제기관 관점) 단절적인 규제 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관리 협업 문화 조성, 부처의 규제발굴 및 국무조정실 조정 추진
- (규제환경 관점) 정보의 비대칭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신산업 현장애로 발굴 및 개선 추진

□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규제제도 관점) 종전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우선허용·사후규제 도입은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실제 신산업 특례 등을 받기 위한 입증과정은 상당히 복잡함
-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등 규제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허가 절차를 거쳐 진입하는 등 여

전히 규제 공급자 중심의 진입규제로 작동하기도 함

- 또한, 2+2년 이내에 법령정비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법령 정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 시장의 자율성을 높게 인정하고 효과적인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자율성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규제제도를 전환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되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
- 자율규제방식으로 기준과 원칙을 개발하고 정부가 수용·관리하는 KISA의 방송통신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는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와 기술계의 자율성과 시장활동을 보장하려는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고무적임
- o (규제기관 관점) 주요한 핵심규제들의 경우, 주무 부처가 규제 권한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하고 심지어 부처 간 갈등양상이 보임
- o (규제환경 관점) 공직자의 신기술 전문성 습득이 더디며,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구조는 제한적이어서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관료들에게 변화하는 환경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혁우,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배재대학교 교수>

□ 그동안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o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행정 수준은 정부교체와 무관하게 꾸준한 규제개혁의 성과
- o 그러나 우리나라 규제개혁은 관료사회의 규제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크고,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가 있으며, 규제개혁 필요성이 높은 중요규제에 대한 개선수요는 여전하다는 특징이 있음
- 관료의 규제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높이는 요인은 1) 정부마다 새로운 규제개혁 수단의 도입, 2) 양적개선에 입각한 전 정부, 지자체, 관료행

태를 포함하는 규제개혁의 실시, 3) 행정절차 간소화의 고도화 등으로 한계투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편익은 작은 구조를 형성임

-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높은 중요 규제의 개혁은 지체되면서, 상대적으로 개선이 용이한 규제에 개혁의 관심이 집중됨
- 규제개혁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바이오규제, 드론 및 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신기술 규제의 경우, 균형발전, 소수자보호, 기존업역 보호 등의 관점에서 해석됨
-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가능 사회의 구현, 사회의 혁신과 성장의 도모, 기존 기득권의 해체를 통한 새로운 발전 모멘텀의 마련이라는 취지에 오해가 발생
-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꾸준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규제개혁 수요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임. 정부의 규제개혁의 대상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술혁신, 새로운 규제개혁 영역인가

- 기술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규제개선이 필요한 새로운 분야처럼 부상된 느낌이 있음
-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등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는 일응 타당한 해석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적어도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온 규제개혁 분야이며 정부의 관심이 지금만큼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 (경직적인 규제) 사회와 경제, 기술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규제는 개

선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규제는 기술혁신을 저해

- (충분하지 않은 규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적기에 충분한 정도로 시행되지 않으면 기술혁신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
- (넓은 규제 개혁 제도) 규제 개선과 규제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기제들이 구체화되지 못한 경우에도 문제

□ 일견 규제 개선 제도는 잘 구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를 통해 규제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 존재

- 그간의 규제 개선의 성과는 해당 규제 건수 혹은 그로 인해 기대되는 규제 비용 감축을 중심으로 제시
- 실제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혹은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
- 규제 개선 노력의 정도가 약하거나 규제 개선 과정에서의 지연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늦춰지고 있을 가능성 상존
- 또한 기존 규제의 경직적 적용으로 인해 신기술 및 혁신적 산업의 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규제로 인해 기술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규제개선 노력 강화 그리고 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바람직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연구위원>

□ 주제발표는 규제제도, 규제기관, 규제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리적 규제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발전시키고, 사후적 위험기반 규제 도입과 동시에 규제기관의 협업문화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입법방식의 전환(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적용 방식)

-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이 무엇인지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
- ‘보충규정’이 있는/없는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의 구별
 - (있는 경우) 보충규정을 활용하여 하위 규정(고시, 훈령) 및 매뉴얼/지침 등으로 얼마든지 상위 법령의 경직성을 제거할 수는 있음
 - (없는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
-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적용 방식은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인정이 공론화되었는지가 관건

□ 혁신제도(규제 샌드박스)

- 입법화를 위한 실증 수단에 불과하며, 실제 법령 개선이 중요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분야 외에도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에 적용된다는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사업 진행을 제한할 수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떤 사업이든지 제한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할 수도 있음
 - 사회적 리스크 인정에 대한 공론화가 더욱 더 중요

3. 미래 대응 제언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조선대학교 교수>

- (연구자들 및 산업현장의 고언) 적극적이고 활발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 발제자가 제안한 규제제도 관점에 대한 제언
 - 원칙중심, 위험기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많은 부분 동의
 - 그러나 원칙기반규제 관리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절차 도출 문제, 위험 기반 규제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방식의 표준화 문제, 국제 규범과 이들 규제의 조화문제 등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음
 - 발제자가 제안한 규제기관 관점에 대한 제언
 - 규제기관의 협업유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
 - 다만, 협업 방식의 설계는 공무원 혹은 부처의 유인 설계와 맞물려야 하는데, 실제 규제현장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 설계는 쉽지 않음
 - 결국 이는 조정권한을 가진 규제관리기구의 신설 문제로 귀착되는 바, 자칫 논의가 기구 신설로 흘러가고 신설 이후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 분석적 과학적 규제관리를 위한 제도설계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함
 - 발제자가 제안한 규제환경 관점에 대한 제언
 - 발제자가 제안한 참여에 기반한 규제개혁체제의 개방성 확보에 공감
 - 다만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발굴 추진 시스템, 규제신문고 등의 작동 성과와 활성화 방법을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발제자가 제안한 규제부담 정도에 따른 규제 차별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

□ 위의 3가지 관점을 관통하는 주요한 전제들

- 규제 현장의 운영 메커니즘 변화 유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노력(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함
 -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의 결과가 공직자의 개인 인센티브와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 전체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협력과 조정을 통한 규제 관리를 위해서는 규제 내용, 규제 과정 등 규제 전반에 대한 과학적 관리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 이는 특히 규제의 사회적 비용 및 편익 관련 분석과 논의를 통한 규제개혁과 그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논거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
- 규제환경의 변화와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결과는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예견할 수 없음
 - 결국 미래 상황에 대한 규제 도입은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도출 과정의 과학화, 규제 절차의 정당성 확보, 그리고 합의된 절차에 의해 도출된 규제를 수용하고 준수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

<이혁우,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배재대학교 교수>

□ 규제개선 의 원칙과 방향

-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개혁 논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돌아가는 것임

- (정부, 민간) 무엇 때문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의 필요함
- (관료, 정치권) 일부 규제에 대한 기획성의 관리만으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대한 공감의 필요함
- 특히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인식이 필요
 - 규제개혁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의 확충과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정비로 규제개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정부 내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내 규제개혁 친화적 관료 양성이 필요
- 기술혁신 분야를 포함한 규제개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내 규제친화적 부처와 규제개혁 친화적 기구의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기술규제 분야에 대한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

- 기술규제의 경우 연구개발, 인증, 규제조화 등 다양한 이슈가 포함된 분야이며, 국내에서는 업역보호의 논리로 활용되거나, 국제적으로는 무역장벽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분야임
 - 특히 연구개발의 경우 신기술 발달 저해를 초래하고 있기도 함
- 기술규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연구조직, 정부조직 구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절실한 시점임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 기술 혁신 관련 규제 개선 제도는 이미 구체적으로 도입된 바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기술혁신의 산업화, 시장화를 앞당길 수 있음
 - 기존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은 사회전체의 편익과 견주어

평가할 필요

-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서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규제자의 규제 개선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유인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고려
 - 궁극적으로는 규제 문화의 변화를 통해 규제자/피규제자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규제개선의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할 필요
 - 적극행정 면책제도, 규제입증책임전환제도 등 공무원 관련 제도들을 강화하고 적절히 운용할 필요
 - 발제자의 제안에 대부분 동의하나 현재의 경직된 규제문화 및 체계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위험기반 규제개선' 및 '유연한 분류체계' 등의 방식 역시 동일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
- 규제 개선의 효과를 감안할 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 규제 개선 관련 인력, 예산과 더불어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제도 확립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연구위원>

- 낮은 규제 품질의 개선
 - 우리나라의 규제완화정책은 규제건수에 대한 집착이 큼
 - 하나의 규제라도 명확히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0개, 100개 등 규제 개선 목표를 정하고 숫자 채우는 것이 목표
 - 그동안 규제건수의 양적인 감소에 치중했고, 규제의 품질 문제는 주로 과도한 규제비용 내지 행정비용으로 파악하고 있는 입장
 -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분석, 규제비용총량제(관리제) 등

- 규제품질은 규제원칙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가령 투명성, 비례성, 책임성, 일관성, 목표성 등의 원칙이 될 수 있음
 - 규제가 불합리할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맞게 규제를 적절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함
 - *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규제 개선, 규제 개혁 작업 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나?

□ 규제의 예측 가능성 향상

- 규제의 기준이 적절치 못한 것과 별개로, 어떤 사항이 금지되어 있고 어떤 것이 허용되는지가 명확하면,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집행이 가능
 - 그런데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없다면, 그야말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됨
- 규제자체가 불명확한 언어로 이해가 어렵게 또는 이해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을 수 있음
- 또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재량행사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 유권해석 등으로 법령상의 불명확성을 제거할 수 있을까?
- 제도의 잦은 변경은 제도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규제 불명확성 야기

□ 낮은 집행률과 준수율에 관한 개선

- 종래부터 우리나라 규제는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은 경향이 있음
 - 규제가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규정이 많아 그대로 집행하는 것 자체가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불가능함
 - 규제기관 스스로 엄격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 R&D감사 개선 이슈의 가장 핵심일수도 있지 않을까?
- 규제기준이 비현실적이면, 대부분 규제규범을 위반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집행률이 낮으니, 개인의 위험부담도 떨어지게 됨

- '운이 나빠 걸리는 경우'에는 제재를 당한다는 인식이 발생
- 연구 규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은 이러한 제도적 배경에서 이해
- 집행률과 준수율이 낮으면 조사 대상이 곧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감사원, 국세청 등 규제기관의 '조사 그 자체'가 제재로 이해되는 현실은 조사 자체로 인한 부담도 하나의 이유지만 조사대상이 되면 바로 제재로 귀결될 확률이 높음

□ 중복 규제의 탈피

- 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최근 과학기술 규제 실무에서 중복규제의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대두
- 주로 ICT와 관련된 정부부처 등의 전문규제기관 사이에 유사한 권한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치명적인 실수로 인한 규제의 공백을 중복규제가 방지해줄 수 있다는 규제기관간의 보완장치라고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복규제는 이러한 보충적 보완장치 기능을 하고 있기 보다는 각 규제기관 사이의 관할권 다툼으로 나타나는 경향
- 그 사이에서 연구자는 과잉규제로 인한 혼란을 겪는 것이 일반적
- * 규제기관에 대한 우선 관할권 제도 개념은?